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160 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정희용·고동진·최수진

김상훈 • 박충권 • 정동만

김태호 • 박준태 • 김선교

서천호 · 주호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3.22.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전통사찰 7개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,

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통사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,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조치 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대하여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, 문화유산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 등).

법률 제 호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및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1. 전통사찰 주변 수목 제거, 방염포 설치 등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
- 2. 배수로 및 석축 정비 등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
- 3.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긴급 보호 및 이전을 위한 조치
- 4. 그 밖에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2(화재 및 재난 방지 등)	제19조의2(화재 및 재난 방지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
	재 및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
	하여 전통사찰에 대하여 다음
	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	1. 전통사찰 주변 수목 제거,
	방염포 설치 등 화재 예방 및
	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
	2. 배수로 및 석축 정비 등 수
	해 예방을 위한 조치
	3.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긴급
	보호 및 이전을 위한 조치
	4. 그 밖에 전통사찰 보존을 위
	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